■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의4서식] <신설 2023. 6. 14.>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일괄 신청서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유 의 사 항

동일 신청자가 동일 입증서류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대해 외국인 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